

## 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37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09월 30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#### 1. 개정이유

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[law.go.kr](http://law.go.kr)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([nics.me.go.kr](http://nics.me.go.kr)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